

2015년 4월 25일 시행

#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사법부그룹웨어(<http://g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5. 4. 27.(월) 10:00 이후  
[ 사법부그룹웨어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 ]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5. 4. 27.(월) 10:00 ~ 2015. 4. 29.(수) 17:00  
방법 : [ 사법부그룹웨어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 ]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5. 5. 8.(금) 11:00 이후  
[ 사법부그룹웨어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 ]에 게시

※ 사법부그룹웨어 정답이의제기 전용 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대리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양도통지는 유효하다.
- ②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③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 ④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문 2】 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
- ②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 ③ 손해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이므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 ④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해제권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문 3】 구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시효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문 4】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③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문 5】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도 없다.
- ②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 ③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민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중구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의 신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 6】 주위토지통행권 및 통행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도, 기존의 확정판결 등이 인정한 통행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다시 통행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③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에 인정되는 무상주위통행권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주장을 할 수 없다.

【문 7】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④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각 1/2씩 공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1/2 지분을 양도한 경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 X 부동산 가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채무자의 위 지분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시 제소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
- ③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철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없다.
- ④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문 9】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②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 ③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또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④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10】 고유의미의 중중 재산의 명의신탁 중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의신탁자인 중중은 그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 전에 처분한 경우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
- ②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인 중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나,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③ 명의신탁자인 중중은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을 상대로 언제든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해지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를 신탁자인 중중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외부관계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 ④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수탁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설령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등기부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11】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토지의 소수지분권자는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과반수지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위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②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실제로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이른 바 3자간 부동산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이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문12】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②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 ④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채권양도가 있으면 양도된 채권의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의 채권은 소멸한다.

【문13】 부모(父母)와 자(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만이 원고적격이 있는 바, 여기서 ‘처’는 자(子)의 생모에 한정되고,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법률상 부(父)와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부부가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妻)가 부(夫)의 자(子)를 포괄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 미치지 않으므로, 자(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된 후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친권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1차 상속재산에 관하여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이해상반행위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이고,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정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양자가 될 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하고 그 부모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문14】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부의 일방이 가재도구 구입 등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다른 일방은 연대책임이 있으나, 금전차용행위는 설령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등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더라도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부 일방의 금전차용행위로 인하여 타방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 ②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③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즉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 법령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이때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반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15】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그 사용, 수익은 각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에 의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②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까지 관리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 ③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나, 그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1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 이라고 함)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가등기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통지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였다면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고 청산기간도 진행하지 않는다.
- ③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고,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 ④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7】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쌍방의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수동채권이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더라도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
- ②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것이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위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문18】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 ②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므로,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이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가등기상의 권리는 본등기를 한 후에만 양도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을 위한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인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9】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 ②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 ④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20】 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 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더라도 기여분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 ③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문21】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정신청사건에도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적용되므로 금전채권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에 관할이 있다.
- ②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이나 조정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③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이후에 당사자가 준비서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조정기일에서 위 준비서면 등을 진술시킨 경우에도 소송복귀 후 수소법원에서 다시 진술시켜야 한다.
-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해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의신청을 취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문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 것이다.
-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다.
- ③ 소제기 후 소송목적물에 값의 등락이나 가치의 손상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 상소심은 이심 당시의 소송목적의 값으로써 기준을 삼아야 한다.
- ④ 종이로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비로소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인지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3】 전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소송 동의는 개별사용자별로 하여야 하고, 등록된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본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해도 소송대리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자유롭게 동의 철회나 그 철회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정에서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를 전제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
- ④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

【문24】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때에 생기므로,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도 소변경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한 때에 발생한다.
- ② 피고가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가 말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다음 법원이 피고에게 이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③ 청구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써 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동의는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 ④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권이 상실된다.

【문25】 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변경하는 원고경정은 허용된다.
- ②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③ 사망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서 일부 누락된 상속인을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피고경정은 제1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문26】 요건사실 및 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면, 그 점유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를 점유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매도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사유를 주장하여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피고가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에 기하여 점유 중에 유익비등을 지출한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26조에 의한 유익비 등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현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민법 제203조에 의한 유익비 등 상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위하여 현 소유자인 원고에게 유치권항변을 할 수 없다.
- ③ 신의정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위배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문27】 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이 상소의 의사가 없더라도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조참가인이 상소할 수 있으나, 피참가인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다룰 수 없다.
- ② 독립당사자참가의 제1심에서 원고 및 참가인 패소, 피고 승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참가인에 대한 판결부분도 확정기 차단되고 그에 관한 소송관계가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③ 인수참가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룰 수 있을 뿐이지만, 인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주주의 1인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을 다른 주주가 공동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상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등은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하고,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문28】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급법원으로 이심된 경우에도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관하여는 상급법원에서 경정할 수 없다.
-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자 표시를 사망한 자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고치는 경정도 허용된다.
- ③ 판결의 경정은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및 화해조서뿐만 아니라 결정과 명령에도 준용된다.
- ④ 경정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에 대한 상소기일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경정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문35】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것이 후에 판명되었다 하여도 중단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소송수계 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다.
- ②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 모든 당사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고,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소의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 ③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원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되었으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상 그 대표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 ④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확정전) 또는 재심(확정후)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36】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기타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 ③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신문의 보충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당사자신문 전에 반드시 선서하도록 하고,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의 액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 ④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나, 그 거짓 진술이 있더라도 확정판결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문3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화해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기각결정으로 절차를 종료한다.
- ② 제1화해가 성립된 후에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된 경우, 제1화해는 실효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소송상 화해는 재심사유에 해당될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루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뿐만 가능하고 변론준비기일 등에서 말로 하는 이의신청은 그 효력이 없다.

【문38】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 ③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는 판단유탈에 해당한다.
- ④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문39】 양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같은 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2회 내지 3회 불출석하여야 하고, 만일 중간에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고 그 전후에 걸쳐 한 차례씩 불출석한 경우에는 2회 불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2회 불출석 이후에 소취하서가 제출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3회 불출석이 있으면 소취하로 종국처리한다.
- ③ 2회 불출석 이후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정한 때에는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경우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40】 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의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판결의 선고는 기일에 공개된 법정에서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나,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때에는 할 수 없다.
- ③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시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④ 판결정본은 당사자 전원은 물론 보조참가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문 1】 미필적 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장한 체격의 군인인 피고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계 줄라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 ② 유흥업소의 업주인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건강진단결과서상의 생년월일 기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 의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
- ③ 의무경찰이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운전자에게 좌회전을 지시하고 불과 30cm 앞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택시 우측 범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충격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 ④ 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인 피고인이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다.

【문 2】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 ②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③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위촉이 종료되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후수뢰죄'가 아닌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뇌물수수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된다.

【문 3】 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다.
- ②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기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어를 요청하였으나, 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으로 인하여 강간행위를 중지한 경우, 이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4】 다음 사례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② 편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 5】 다음 설명 중 교사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甲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무고교사죄에 해당한다.
- ②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공무원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乙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한 경우, 그 후 乙이 甲에게 알려지 아니한 채 낙태시술을 받았더라도 甲에게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

【문 6】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였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자체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손자인 피고인이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할아버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문 7】 다음 중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증인진술서 내용 중 허위가 있는 경우
- ②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③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를 마친 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 ④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의 교사를 받은 甲이 관련사건의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었다가, 그 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채택된 甲이 위 관련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허위 진술을 철회한 경우

【문 8】 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③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 ④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문 9】 다음 설명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가처분신청 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 ② 피고인이 불심검문하는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불심검문 당시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요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③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④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한다) 위원장이 위원장의 자격으로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면서, 乙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위원장실에 이미 입실한 상태에서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하여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로 하여금 甲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자,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甲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문10】 다음 설명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 ①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 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와는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며, 이는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③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계의 의사표시로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였다면,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

【문11】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심리 할 수 있다. 다만,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문12】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나,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이적표현물로 소지하였다는 책자들을 증거로 채택한 경우 이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인 검사로 하여금 그 책자들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면 된다.
- ④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등과 같이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그 매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문13】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기각결정을 받은 이후 같은 법원에 다시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 ③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④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문18】 디지털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이나 증거조사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디지털 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 ② 문자정보가 기억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증거조사한 경우에는 증거목록의 기재방법은 증인 등 목록이 아닌 증거서류 등 목록에 증거조사 사실을 기재한다.
- ③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④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19】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국민참여절차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 ③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치유될 수 없다.
- ④ 법원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20】 감정유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유치하려면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②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구속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유치된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된다.
- ③ 법원은 유치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으나 연장할 수는 없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할 때에는 미리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 1】 집행문 부여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은 집행문이 없어도 가능하나, 매수인이 매각대금완납 후 받은 부동산인도명령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다.
- ②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증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 ③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또는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문에 채권자·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
- ④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문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의 조사 및 집행법원의 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국세채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진행 중에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 ④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 경매 목적물인 경우에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주무관청의 취득허가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하지만,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그 확정 후에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 3】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무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② 우선채권이란 압류채권자 즉 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매각대금에서 변제받게 될 채권을 말하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우선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압류채권자는 무잉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청 및 충분한 보증제공을 하여야 하므로, 만일 1주일 경과 후에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다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④ 남을 것이 없음을 간과한 채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하자는 치유되므로, 매각결정 기일까지도 그 과오를 발견하지 못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으면 그 후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문 4】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당시에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여야 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여도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 ②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의 퇴직금청구권 및 골프회원의 예치보금반환청구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 ③ 급여·연금·봉급·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압류할 수 없는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여기서의 퇴직연금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도 포함되므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 ④ 집행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문 5】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2014. 10. 7. 경매개시결정등기된 부동산에 2014. 9. 15.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채권신고 최고의 대상이 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 ② 2014. 10. 7. 강제경매 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가 2014. 12. 23.인데, 2014. 12. 29.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2015. 2. 16. 이중압류를 한 경우 이중 경매신청인인 근저당권자는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③ 2014. 10. 7. 강제경매 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2014. 12. 23.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 ④ 체불입금확인서에 의하여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와 주택임차인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이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문 6】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되기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그 송달 시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③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 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자가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 7】 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그 가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 ② 보전처분이 본집행으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보전처분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③ 채권가압류에 대한 취소사건에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고, 결정문에 제3채무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것을 이유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 8】 민사집행법 제49조의 강제집행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 취소재판(민사집행법 제50조)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 ② 집행할 판결이 있는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대금납부 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 ③ 제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실효될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의 제출은 집행취소사유(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추심명령이 있는 후에 집행정지서류(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4호)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채권의 추심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문 9】 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 후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②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③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에 해당한다.
- ④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문10】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최고와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최고나 통지를 한 때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③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은 가망이 없을 경우에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하는 통지는 반드시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민사집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 채무자에게 하는 통지는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11】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각허부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각 실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의 사이에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 하도록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일단 매각결정기일을 연 다음에 매각불허가결정을 함이 상당하다.
- ②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집행법원은 이를 참고로 매각 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 ③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이는 입찰가격에 중대한 오기를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 ④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뒤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1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 ④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13】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 ② 금전채권 전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동일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선행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
- ③ 전부명령이 발령된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 또는 변제나 기한유예증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④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그가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문14】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서로 동순위이므로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 ②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③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
- ④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문1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것이면 새로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여 공고·고지·최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이미 배당요구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 경매절차에서도 인정되고 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
- ② 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거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하는데, 고지는 법원에 알려진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와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등에게 하여야 한다.
- ③ 법원사무관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기타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과 액수를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도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문16】 매각절차의 하자과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여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②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건물의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바탕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미 매각대금을 다 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17】 보전처분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 ②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지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집행의 보전은 배당금지금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문18】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④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한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으며,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진행한다.

【문19】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종료되기까지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권원이 미확정인 때에는 확정 후라야 본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채무자는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이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문20】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보와 함께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하고, 집행권원은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된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된다.
- ②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고, 교부송달 외에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은 가능하다.
- ③ 재산명시신청의 각하·기각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각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④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명시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위 감치결정은 그 고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문 1】 등기의 방문신청 시 인감증명 제출(첨부)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20]까지 같음)

- ① 증여나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또는 등기신청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채무자 표시의 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실질은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문 2】 등기신청의 취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②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등기신청이 등기관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도 그 취하는 그 중 일방의 특별수권만으로 할 수 있다.

【문 3】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4】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였다도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 완성, 공유물 분할,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 공매 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때에는 매각결과와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들로부터 인터넷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대신 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에 서버컴퓨터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이를 그 건물과 함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③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목록에 기록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목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양식시설도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문 6】 지상권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써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토지에 관하여 지료의 약정이 있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채권자는 동일 채권의 담보로 甲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乙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때 甲 부동산의 소유자와 乙 부동산의 지상권자는 동일해야 한다.
- ④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확정기간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문 7】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으로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관리청 변경을 사유로 변경 전 관리청이 압류등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 ② 甲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는 丙이 등기의부자, 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후에 乙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회복함에 있어 乙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④ 체납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착오로 소멸되지 않는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말소된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회복등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문 8】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등기관은 촉탁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농지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함에 있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 9】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탁등기를 권리의 설정, 보존 또는 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할 때에는 권리의 설정, 보존 또는 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 ③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기록한다.
- ④ 신탁을 원인으로 지상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10】 다음 네모 안의 등기신청(촉탁) 중 사안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ㄷ) 가압류 기입등기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을 한 경우
- (ㄹ)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 (ㅁ)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을 한 경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11】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상 담보(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 ②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丙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丙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도 있다.
- ③ 변제공탁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가압류해방공탁은 원시적으로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출급청구권이 없다.

**【문12】 상대적불확지 공탁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지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 ③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된다. 이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양수인의 선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된다.
- ④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탁근거 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가처분채무자(부동산 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문13】 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원인사실을 ‘채권자불확지’, 피공탁자는 ‘乙 또는 丙’으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이므로 허용된다.
- ②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공탁 후 압류·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한 것이 발견된 경우 이를 공탁원인사실에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 ③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이를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이 수리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의 효력을 갖는다.

【문14】 변제공탁물의 회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만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을 소멸한다.
- ②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공탁 후에 저장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후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문15】 변제공탁의 일부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에서,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하여도 이는 유효한 공탁이다.
- ③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 ④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일부공탁에 해당되어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문16】 乙에게 대여금 채무가 있는 甲은 피공탁자를 乙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공탁물 회수권을 행사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 ② 甲의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乙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甲의 채권자인 丙이 공탁자인 甲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 ④ 공탁자인 甲이 피공탁자인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문17】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경우 그 승계인은 피공탁자의 정정이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서만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③ 수용보상금이 상대적불확지 공탁이 된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 ④ 수용보상금이 절대적불확지 공탁이 된 경우 공탁자가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음에도 공탁서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18】 甲은 대여금채권 2,000만 원에 기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이에 乙은 해방금 2,000만 원을 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방금액을 공탁한 乙이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면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한다.
- ② 가압류채권자 甲은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첨부하여 바로 해방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③ 가압류채권자 甲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가압류채권자 甲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전부명령을 한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차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공탁소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받을 수 없다.

【문19】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000만 원이 있는데, 乙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丙의 채권가압류결정, 丁에게 위 채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통지서가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의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양도인 乙 또는 양수인 丁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된 사실을 통지하는 의미의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관할법원은 乙 또는 丁의 주소지 소재 법원 공탁소 중 한 곳에 하면 된다.
- ③ 양수인 丁은 피공탁자 乙 및 가압류권자 丙을 피고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이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④ 가압류권자 丙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압류로 이전하게 되면,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20】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는 사유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③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015년 4월 25일 시행

#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사법부그룹웨어(<http://g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5. 4. 27.(월) 10:00 이후  
[ 사법부그룹웨어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 ]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5. 4. 27.(월) 10:00 ~ 2015. 4. 29.(수) 17:00  
방법 : [ 사법부그룹웨어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 ]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5. 5. 8.(금) 11:00 이후  
[ 사법부그룹웨어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 ]에 게시

※ 사법부그룹웨어 정답이의제기 전용 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구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시효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문 2】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문 3】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도 없다.
- ②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 ③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민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중공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의 신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 4】 대리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양도통지는 유효하다.
- ②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③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 ④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문 5】 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
- ②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 ③ 손해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이므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 ④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해제권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문 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각 1/2씩 공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1/2 지분을 양도한 경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 X 부동산 가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채무자의 위 지분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시 제소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
- ③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없다.
- ④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문 7】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②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라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 ③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또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④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 8】 주위토지통행권 및 통행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도, 기존의 확정판결 등이 인정한 통행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다시 통행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③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에 인정되는 무상주위통행권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주장을 할 수 없다.

【문 9】 임대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④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10】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②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 ④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채권양도가 있으면 양도된 채권의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의 채권은 소멸한다.

【문11】 부모(父母)와 자(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만이 원고적격이 있는 바, 여기서 ‘처’는 자(子)의 생모에 한정되고,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법률상 부(父)와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부부가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妻)가 부(夫)의 자(子)를 포탈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 미치지 않으므로, 자(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된 후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친권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1차 상속재산에 관하여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이해상반행위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전체가 무효이고,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위에 한정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하고 그 부모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문12】 고유의미의 중증 재산의 명의신탁 중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의신탁자인 중증은 그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 전에 처분한 경우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
- ②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인 중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나,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③ 명의신탁자인 중증은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을 상대로 언제든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해지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를 신탁자인 중증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외부관계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 ④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수탁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설령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등기부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13】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토지의 소수지분권자는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과반수지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위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②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실제로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이른 바 3자간 부동산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이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문1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함)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가등기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통지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였다면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고 청산기간도 진행하지 않는다.
- ③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고,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 ④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5】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쌍방의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수동채권이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더라도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
- ②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것이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위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문16】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부의 일방이 가계도구 구입 등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다른 일방은 연대책임이 있으나, 금전차용행위는 실령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등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더라도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부 일방의 금전차용행위로 인하여 타방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 ②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③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즉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 법령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이때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반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17】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그 사용, 수익은 각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에 의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②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까지 관리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 ③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나, 그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18】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 ②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므로,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이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가등기상의 권리는 본등기를 한 후에만 양도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을 위한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인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9】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 ②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 ④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20】 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 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더라도 기여분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 ③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문21】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정신청사건에도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적용되므로 금전채권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에 관할이 있다.
- ②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이나 조정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③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이후에 당사자가 준비서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조정기일에서 위 준비서면 등을 진술시킨 경우에도 소송복귀 후 수소법원에서 다시 진술시켜야 한다.
-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해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의신청을 취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문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 것이다.
-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다.
- ③ 소제기 후 소송목적물에 값의 등락이나 가치의 손상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 상소심은 이심 당시의 소송목적의 값으로써 기준을 삼아야 한다.
- ④ 종이로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비로소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인지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3】 요건사실 및 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면, 그 점유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를 점유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매도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사유를 주장하여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피고가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에 기하여 점유 중에 유익비등을 지출한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26조에 의한 유익비 등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현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민법 제203조에 의한 유익비 등 상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위하여 현 소유자인 원고에게 유치권항변을 할 수 없다.
- ③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위배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문24】 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이 상소의 의사가 없더라도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조참가인이 상소할 수 있으나, 피참가인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다투지 못한다.
- ② 독립당사자참가의 제1심에서 원고 및 참가인 패소, 피고 승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참가인에 대한 판결부분도 확정되어 차단되고 그에 관한 소송관계가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③ 인수참가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투지 않을 뿐이지만, 인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주주의 1인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을 다른 주주가 공동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상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등은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하고,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문25】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급법원으로 이심된 경우에도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관하여는 상급법원에서 경정할 수 없다.
-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자 표시를 사망한 자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고치는 경정도 허용된다.
- ③ 판결의 경정은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및 화해조서뿐만 아니라 결정과 명령에도 준용된다.
- ④ 경정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에 대한 상소기일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경정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된다.

【문26】 전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소송 동의는 개별사용자별로 하여야 하고, 등록된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본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해도 소송대리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자유롭게 동의 철회나 그 철회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정에서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를 전제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
- ④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

【문27】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때에 생기므로,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 효력도 소변경신청서의 부분을 송달한 때에 발생한다.
- ② 피고가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가 말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다음 법원이 피고에게 이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③ 청구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써 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동의는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 ④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권이 상실된다.

【문28】 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변경하는 원고경정은 허용된다.
- ②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③ 사망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서 일부 누락된 상속인을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피고경정은 제1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문35】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 ③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는 판단유탈에 해당한다.
- ④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문36】 양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같은 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2회 내지 3회 불출석하여야 하고, 만일 중간에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고 그 전후에 걸쳐 한 차례씩 불출석한 경우에는 2회 불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2회 불출석 이후에 소취하서가 제출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3회 불출석이 있으면 소취하로 종국처리한다.
- ③ 2회 불출석 이후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정한 때에는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경우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37】 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의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판결의 선고는 기일에 공개된 법정에서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나,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때에는 할 수 없다.
- ③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시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④ 판결정본은 당사자 전원은 물론 보조참가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문38】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것이 후에 판명되었다 하여도 중단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소송수계 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다.
- ②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 모든 당사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고,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소의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 ③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되었으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상 그 대표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 ④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확정전) 또는 재심(확정후)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39】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기타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 ③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신문의 보충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당사자신문 전에 반드시 선서하도록 하고,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의 액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 ④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나, 그 거짓 진술이 있더라도 확정판결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문4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화해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기각결정으로 절차를 종료한다.
- ② 제1화해가 성립된 후에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된 경우, 제1화해는 실효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소송상 화해는 재심사유에 해당될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변론준비기일 등에서 말로 하는 이의신청은 그 효력이 없다.

【문 1】 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다.
- ②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의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어를 요청하였으나, 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으로 인하여 강간행위를 중지한 경우, 이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2】 다음 사례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② 편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 3】 다음 설명 중 교사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甲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무고교사죄에 해당한다.
- ②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공무원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공무원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乙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한 경우, 그 후 乙이 甲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낙태시술을 받았더라도 甲에게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

【문 4】 미필적 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장한 체격의 군인인 피고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 ② 유흥업소의 업주인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건강진단결과서상의 생년월일 기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행위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
- ③ 의무경찰이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운전자에게 좌회전을 지시하고 불과 30cm 앞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택시 우측 범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충격하였다면, 공무원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 ④ 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인 피고인이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다.

【문 5】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명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 ②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③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위촉이 종료되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후수뢰죄’가 아닌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뇌물수수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된다.

【문 6】 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③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 ④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문 7】 다음 설명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가져분신청 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 ② 피고인이 불심검문하는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불심검문 당시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③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④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한다) 위원장이 위원장의 자격으로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면서, 乙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위원장실에서 이미 입실한 상태에서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하여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로 하여금 甲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자,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甲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문 8】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였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자체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손자인 피고인이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할아버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문 9】 다음 중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증인진술서 내용 중 허위가 있는 경우
- ②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③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를 마친 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 ④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의 교사를 받은 甲이 관련사건의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었다가, 그 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채택된 甲이 위 관련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허위 진술을 철회한 경우

【문10】 다음 설명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 ①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 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와는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며, 이는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③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계의 의사표시로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였다면,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

【문11】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심리 할 수 있다. 다만,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문12】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나,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이적표현물로 소지하였다는 책자들을 증거로 채택한 경우 이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인 검사로 하여금 그 책자들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면 된다.
- ④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등과 같이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그 매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문13】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기각결정을 받은 이후 같은 법원에 다시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 ③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④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문18】 감정유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유치하려면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②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구속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유치된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된다.
- ③ 법원은 유치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으나 연장할 수는 없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할 때에는 미리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19】 디지털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이나 증거조사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디지털 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정한 등본을 낼 수 있다.
- ② 문자정보가 기억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증거조사한 경우에는 증거목록의 기재방법은 증인 등 목록이 아닌 증거서류 등 목록에 증거조사 사실을 기재한다.
- ③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④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20】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국민참여절차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 ③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치유될 수 없다.
- ④ 법원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량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무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② 우선채권이란 압류채권자 즉 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매각대금에서 변제받게 될 채권을 말하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우선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압류채권자는 무잉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청 및 충분한 보증제공을 하여야 하므로, 만일 1주일 경과 후에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다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④ 남을 것이 없음을 간과한 채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하자는 치유되므로, 매각결정 기일까지도 그 과오를 발견하지 못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으면 그 후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문 2】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당시에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여야 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여도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 ②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의 퇴직금청구권 및 골프회원의 예치보증금반환청구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 ③ 급여·연금·봉급·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압류할 수 없는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여기서의 퇴직연금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도 포함되므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 ④ 집행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문 3】 집행문 부여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은 집행문이 없어도 가능하나, 매수인이 매각대금완납 후 받은 부동산인도명령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다.
- ②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 ③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또는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문에 채권자·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
- ④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문 4】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의 조사 및 집행법원의 조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국세채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진행 중에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 ④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 경매 목적물인 경우에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주무관청의 취득허가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하지만,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그 확정 후에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 5】 민사집행법 제49조의 강제집행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 취소재판(민사집행법 제50조)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 ② 집행할 판결이 있는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대금납부 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 ③ 제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실효될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의 제출은 집행취소사유(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추심명령이 있는 후에 집행정지서류(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4호)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채권의 추심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문 6】 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 후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②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③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에 해당한다.
- ④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문 7】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2014. 10. 7. 경매개시결정등기된 부동산에 2014. 9. 15.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채권신고 최고의 대상이 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 ② 2014. 10. 7. 강제경매 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가 2014. 12. 23.인데, 2014. 12. 29.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2015. 2. 16. 이중압류를 한 경우 이중경매신청인인 근저당권자는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③ 2014. 10. 7. 강제경매 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2014. 12. 23.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 ④ 체불임금확인서에 의하여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와 주택임차인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이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문 8】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되기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그 송달 시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③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 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자가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 9】 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그 가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 ② 보전처분이 본집행으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보전처분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③ 채권가압류에 대한 취소사건에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고, 결정문에 제3채무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것을 이유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10】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 ② 금전채권 전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동일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선행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
- ③ 전부명령이 발령된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보 또는 변제나 기한유예증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④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그가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문1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채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서로 동순위이므로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
- ②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③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
- ④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문12】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최고와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최고나 통지를 한 때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③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하는 통지는 반드시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민사집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 채무자에게 하는 통지는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13】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각허부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각 실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의 사이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일단 매각결정기일을 연 다음에 매각불허가결정을 함이 상당하다.
- ②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집행법원은 이를 참고로 매각 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 ③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이는 입찰가격에 중대한 오기를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 ④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뒤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14】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 ④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15】 보전처분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 ②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집행의 보전은 배당금지급청구권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문16】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④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한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으며,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진행된다.

【문17】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것이라면 새로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여 공고·고지·최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이미 배당요구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 경매절차에서도 인정되고 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
- ② 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거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하는데, 고지는 법원에 알려진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와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등에게 하여야 한다.
- ③ 법원사무관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기타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과 액수를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도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문18】 매각절차의 하자과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여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②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건물의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바탕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미 매각대금을 다 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19】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종료되기까지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권원이 미확정인 때에는 확정 후라야 본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채무자는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이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문20】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보와 함께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하고, 집행권원은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된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된다.
- ②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고, 교부송달 외에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은 가능하다.
- ③ 재산명시신청의 각하·기각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각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④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명시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위 감치결정은 그 고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문 1】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20] 까지 같음)

- ①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였다더라도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 완성, 공유물 분할,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 공매 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때에는 매각결과와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들로부터 인터넷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대신 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에 서버컴퓨터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이를 그 건물과 함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③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목록에 기록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목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양식시설도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문 3】 지상권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써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토지에 관하여 지료의 약정이 있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채권자는 동일 채권의 담보로 甲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乙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때 甲 부동산의 소유자와 乙 부동산의 지상권자는 동일해야 한다.
- ④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확정기간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문 4】 등기의 방문신청 시 인감증명 제출(첨부)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여나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또는 등기신청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채무자 표시의 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실질은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문 5】 등기신청의 취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②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등기신청이 등기관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도 그 취하는 그 중 일방의 특별수권만으로 할 수 있다.

【문 6】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7】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으로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관리청 변경을 사유로 변경 전 관리청이 압류등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 ② 甲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는 丙이 등기의부자, 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후에 乙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회복함에 있어 乙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④ 체납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착오로 소멸되지 않는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말소된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회복등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문 8】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등기관은 촉탁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농지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함에 있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 9】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탁등기를 권리의 설정, 보존 또는 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할 때에는 권리의 설정, 보존 또는 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 ③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기록한다.
- ④ 신탁을 원인으로 지상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10】 다음 네모 안의 등기신청(촉탁) 중 사안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ㄷ) 가압류 기입등기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을 한 경우
- (ㄹ)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 (ㅁ)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을 한 경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11】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상 담보(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 ②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丙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丙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도 있다.
- ③ 변제공탁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가압류해방공탁은 원시적으로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출급청구권이 없다.

【문12】 상대적불확지 공탁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지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 ③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된다. 이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양수인의 선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된다.
- ④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탁근거 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가처분채무자(부동산 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문13】 乙에게 대여금 채무가 있는 甲은 피공탁자를 乙로 하여 변제 공탁을 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공탁물 회수권을 행사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 ② 甲의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乙이 공탁물 출금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甲의 채권자인 丙이 공탁자인 甲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 ④ 공탁자인 甲이 피공탁자인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문14】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물 출금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금을 거부당한 자는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금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경우 그 승계인은 피공탁자의 정정이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서만 출금청구할 수 있다.
- ③ 수용보상금이 상대적불확지 공탁이 된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은 출금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 ④ 수용보상금이 절대적불확지 공탁이 된 경우 공탁자가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음에도 공탁서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금청구를 할 수 있다.

【문15】 甲은 대여금채권 2,000만 원에 기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이에 乙은 해방금 2,000만 원을 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방금액을 공탁한 乙이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면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한다.
- ② 가압류채권자 甲은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첨부하여 바로 해방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③ 가압류채권자 甲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가압류채권자 甲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전부명령을 한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공탁소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받을 수 없다.

【문16】 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원인사실을 ‘채권자불확지’, 피공탁자는 ‘乙 또는 丙’으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이므로 허용된다.
- ②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공탁 후 압류·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한 것이 발견된 경우 이를 공탁원인사실에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 ③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이를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이 수리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의 효력을 갖는다.

【문17】 변제공탁물의 회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공탁수탁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만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 ②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공탁 후에 저장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후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문18】 변제공탁의 일부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에서,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하여도 이는 유효한 공탁이다.
- ③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 ④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일부공탁에 해당되어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문19】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000만 원이 있는데, 乙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丙의 채권가압류결정, 丁에게 위 채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통지서가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의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양도인 乙 또는 양수인 丁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된 사실을 통지하는 의미의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관할법원은 乙 또는 丁의 주소지 소재 법원 공탁소 중 한 곳에 하면 된다.
- ③ 양수인 丁은 피공탁자 乙 및 가압류권자 丙을 피고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이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④ 가압류권자 丙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압류로 이전하게 되면,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20】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는 사유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③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015년 4월 25일 시행

#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2교시

민법, 민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15. 4. 25.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 민 법

**【문 1】** 甲은 2013. 1. 1. 乙에게 X 부동산(상가)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 기간 :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 보증금 :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함)

乙은 같은 날 甲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X 부동산에서의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음에 관하여 답하시오(다만, 아래 가, 나항은 상호 관련이 없는 별개 사안임).[총20점]

가. 乙은 2014. 10.분과 2014. 11.분 각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乙은 2014. 12. 5. 甲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甲은 乙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연체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어 더 이상 乙과의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때 甲이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나. 乙은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차임을 아래와 같이 연체하거나 그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2014. 8. 10. 50만 원

2014. 9. 5. 50만 원

2014. 10. 미지급

2014. 11. 10. 100만 원

2014. 12. 31. 100만 원

甲은 2014. 12. 31. 乙로부터 위와 같이 차임을 지급받으면서 乙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니 영업을 잘 해보라고 하면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甲은 2015. 1. 10.경 丙에게 X 부동산(상가)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乙도 그 무렵 丙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였다. 한편, 丙은 2015. 1. 31.경 乙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乙이 그동안 연체한 차임의 합계액이 300만 원에 이른다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이 경우 丙의 위 해지통보가 유효한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문 2】** 甲은 2010. 5.경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丙은 2010. 10.경 乙에 대한 X 부동산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X 부동산의 외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직원을 상주하게 하는 등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甲은 2010. 11. 1. 위 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丁은 2010. 11. 2. 乙에 대한 X 부동산 관련 건축자재대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역시 X 부동산의 외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직원을 상주하게 하는 등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10. 11. 3. 위 경매신청에 기하여 X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戊는 2011. 5.경 위 경매절차에서 X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1. 6. 15.경 丙이 乙에 대한 허위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X 부동산에서 丙의 직원을 내쫓고 丙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그리고 戊는 2011. 7.경 丙과 丁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가. 丙과 丁이 각자의 유치권을 주장하여 戊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유치권의 요건에 비추어 설명하시오.[30점]

나. 만약 귀하가 丙으로부터 위 사실관계를 듣고 이에 관한 조언을 요청받았다면 어떠한 주장 또는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할 것인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20점]

**【문 3】** 甲은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해당하는 X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乙은 자신의 책임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이 확정되었고, 이에 乙은 甲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는데, 이 또한 이미 소비하여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甲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乙은 2015. 10.말까지 甲에게 지급할 5,000만 원을 대신하여 Y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다.

그런데 Y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丙이었는데, 甲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乙에게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하면서 항의하였는데, 乙은 丙과 사이에 모두 이야기가 되어 있으므로 Y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가. 甲과 乙 사이의 위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甲이 위 약정과 관련하여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4~5줄로 간략히 설명하시오.[15점]

나. 甲은 乙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는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4~5줄로 간략히 설명하시오.[15점]

2015. 4. 25.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 민 사 소 송 법

**【문 1】**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50점]

**【문 2】** 부대항소의 요건과 방식 및 접수 후 사무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5점]

**【문 3】** 소장부분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5점]

2015년 4월 25일 시행

#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3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15. 4. 25.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형 법

**【문 1】** 다음 사안을 읽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10줄 이내로 간단히 약술하시오. [총40점]

[사안]

甲은 2010. 5. 4. 절도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 2. 확정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을 2011. 3. 5. 종료하였다(① 전과). 그 후 甲은 2010. 8. 5. 저지른 공갈죄가 뒤늦게 발견되어 기소된 재판에서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23. 확정되었다(② 전과). 그런데 甲은 위 재판을 전후하여 2014. 2. 28, 2014. 3. 9, 2014. 5. 27. 계속 상습사기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7. 확정되었다(③ 전과).

가. ③ 전과의 재판 당시 ② 전과의 죄는 ③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고, 만약 ② 전과의 범행일자가 2011. 8. 5.이라면 ③ 전과의 죄 일부가 ②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약술하시오. [20점]

나. ③ 전과의 범행이 ① 전과와 관련하여 전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문 2】** 甲은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마치 A 시계에 관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것처럼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고, 위 쇼핑몰의 판매자에게 찾아가 결제가 정상적으로 된 것처럼 말한 다음 위 A 시계를 수령하였다. 그 후 甲은 위와 같은 사정을 친구 乙에게 말하고 위 A 시계를 보관하게 하였다. 甲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죄책만 부담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장물보관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에 관해 약술하시오.[30점]

**【문 3】** 다음에서 설명하는 각 대상들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총30점]

가. 상해의 도구로 사용된 피해자 소유의 몽둥이[5점]

나. 수뢰죄에 있어서 뇌물[5점]

다. 절취한 현금을 보관해 둔 범인 소유의 금고[5점]

라.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문서[5점]

마. 절취한 시계를 판매해서 생긴 현금[5점]

바. 강도범행에 사용된 길에서 주운 칼[5점]

# 형사소송법

**【문 1】** 아래 각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설명).[총40점]

- 가. 수사보고서에 고소인과의 전화문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5점]
- 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장소에 대한 실황조사서[5점]
- 다. 수사보고서에 검증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5점]
- 라. 유인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한 수사보고서[5점]
- 마. 외국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5점]
- 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제1심 증인을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그 과정을 영상녹화한 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5점]
- 사.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수사기관이 조사한 객관적 사실을 보고하는 것인 경우[10점]

**【문 2】** 제1심 법원이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분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 가. 이 사안에서 제1심 소송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밝히시오.[15점]
- 나. 이 경우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재판절차는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하시오.[15점]

**【문 3】** 제1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검사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가. 선고유예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15점]**

나. 검사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법원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가 적법한지 여부를 밝히시오. **[5점]**

다. 이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판결 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설명하시오(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10점]**